

## 교직원윤리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교직원윤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9.15)

**제2조 (위원회 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정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교목실장 및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(개정 2015. 5. 1, 2019. 8. 1., 2021. 3. 1.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**제3조 (위원장 등의 임무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 (위원회의 지위)**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.

**제5조 (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)** ① 위원회는 호서대학교 교직원(강사 포함)의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, 심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. (개정 2021. 3. 1.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윤리강령의 제정
2. 윤리강령에 의거한 윤리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해석
3. 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, 개정발의
4. 윤리강령과 윤리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
5. 징계양정기준에 의거한 교직원 징계 심의 (신설 2010.9.15)
6. 총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또는 사건
7.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
8.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

**제6조 (위원회 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 심의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.

**제7조 (심의요청)** ① 교원, 직원 및 학생 등 개인이나 대학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교직원의 특정행위가 윤리강령과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교직원, 대학부서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특정교직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별지서식의 신고서에 의거 신고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전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)** ① 위원회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피신청인,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며, 피신청인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, 시정요구, 중재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전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9조 (제재)**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, 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한 제재를 결정한다.

②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주의 환기
2. 비공개 경고
3. 공개 경고
4. 시정 권고
5. 관련자에 대한 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요구

**제10조 (재심의)**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회의 기피)**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회의 참석을 기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적 위원수는 당해 위원수를 제외한다.

**제12조 (비밀유지의무)** ①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.

② 제7조, 제8조 및 제9조의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.

**제13조 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)**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허위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)** 피조사자의 명예를 손상하려는 의도로 허위 신고한 제보자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5조 (간사위원)**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은 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9. 8. 1., 2021. 3. 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9. 8. 1.)**

**제1조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** 조직개편에 따라 ‘사무처’를 ‘총무처’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